

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공고
제2024-01호

2024년 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
부산지역 수시 훈련과정 모집 공고

2024. 3.

1 사업 개요

□ 추진 배경

- 고용위기 사업장, 취약계층 등 직업훈련이 빠르게 공급되어야 하는 **훈련수요에 대한 대응 속도 강화 필요**
- 부산지역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을 포함한 지역 기업체 및 산업계의 수시 인력 및 훈련 수요에 신속 대응
- 현장성 높은 훈련 공급을 통한 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(이하 지산맞)의 효율적 개설

□ 추진 근거

- 「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칙」 제26조(수시훈련과정 심사 및 승인)

□ 사업 내용

○ 사업 목적

- 부산지역 수시 훈련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연 1회 이루어지는 정기 훈련심사를 보완하기 위해 수시 훈련과정 개발 및 공급
- 부산지역 내 특화산업 및 신기술·신산업 훈련과정을 부산인자위 주도 하에 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수시 훈련과정으로 효율적 개설 및 운영 도모

○ 지원 대상

- ① 지역 현안 및 주력산업 관련 등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산업
- ② 4차 산업혁명 대비 신기술·신산업 또는 지역특화전략산업
- ③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대상 업종에 속하는 산업
- ④ IT·ICT서비스·SW개발, (정보)통신업, 콘텐츠·방송산업 등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인력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직종
- ⑤ 취약계층(중장년, 경력단절여성 등) 특화과정
- ⑥ 그 외 정부정책 연계, 고용위기에 따른 유급휴가 훈련과정 등 훈련과정 개설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훈련과정

○ 훈련과정: 위기 사업장 및 취약계층 대상 훈련을 중심으로, 기존 지산맞 훈련 과정과 중복되지 않는 과정

○ 기본 운영방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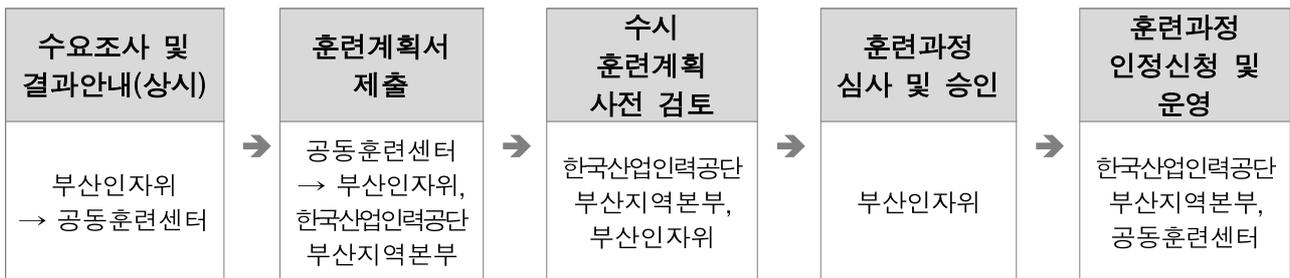
구분	정기 훈련 과정	수시 훈련 과정
심사주체	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- 공단 본부	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
심사시기	전년도 4분기	계획 시행 이후 연도 중 필요 시
특징	기초 수요조사 결과를 활용한 연도별 인력양성기본계획에 따름	지역 고용현안에 즉시 대응 및 심층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연도 중 상시 운영 가능

-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심층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훈련과정 설계 → 심사

○ 심사 및 승인

- 훈련예산: 2024년 부산지역 내 수시 훈련과정 예산 한도(148,246천 원) 내 승인

- 과정심사: 2024년 수시 훈련과정 심사체계 준용



2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선정

1. 총괄

□ 부산지역 수시 훈련비용(예산): 148,276천 원

- 지역별 승인된 훈련비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된 수시 훈련과정 심사 및 승인
(단위: 천 원)

계(A)	정기승인액(B)	수시훈련비용(A-B)
2,423,588 (100.0%)	2,275,312 (93.9%)	148,276 (6.1%)

※ 훈련비용=훈련비+수당+숙식비

2. 참여 훈련기관

구분	내용
공동 훈련센터	○ 2024년 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동훈련센터 6개소
파트너 훈련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격요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인증평가 결과 1년 이상 인증받은 기관에 한함 *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」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(한국폴리텍대학 등)은 인증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참여 가능 - 단, ① 「대학기본역량진단(교육부 주관)」결과 정부재정지원 가능 대학에서 제외된 대학(II유형), ②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인증평가 결과 ‘인증유예’ 기관, ③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」에 따라 행정처분 중인 기관은 참여 불가 ○ 비용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인프라비용은 지원 불가하며, 훈련비용(훈련비+숙식비+수당+임금 등)만 지원 가능 - 매칭된 공동훈련센터는 파트너 훈련기관의 훈련과정에 대한 HRD-Net 입력, 훈련비용 신청 등 행정처리 지원 ○ 기타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타 훈련사업에 참여 중인 훈련기관도 요건* 부합 시 파트너 훈련기관으로 참여 가능 - 훈련과정은 사업 간 중복 불가 <p>※ 파트너훈련기관 신청 요건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(공공직업훈련기관 외 지정 직업훈련시설(민간직업훈련기관)까지 포함) 2) 사업주 단체 및 그 연합체 3)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, 전문대학(방송대학, 통신대학, 사이버대학 제외) 4) 「평생교육법」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5)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공기관 중 훈련사업 실시 경험이 있는 기관 6)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평생직업교육학원 7)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

3. 수시 훈련과정 개요

□ 훈련과정 설계

○ 우선순위 고려사항

- ① 부산지역 과소공급 과정(수요조사 결과 반영)
- ② 지역 현안 및 주력산업 관련 등 부산인자위에서 필요하다고 심의·의결한 산업 관련 훈련과정
- ③ 지역특화산업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·신산업 훈련과정
- ④ 고용위기산업, 취약계층(중장년, 경력단절여성 등) 특화과정
- ⑤ IT·ICT서비스·SW개발, (정보)통신업, 콘텐츠·방송산업 등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인력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직종 대상 훈련과정
- ⑥ 취업률(채용예정자), 수료율, 전년도 훈련규모 등 기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(채용약정서 등) 등 실적이 우수한 훈련과정
- ⑦ 그 외 정부정책 연계 훈련과정 등 개설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훈련과정

○ 2023년 부산지역 우선훈련직종(미개설된 훈련직종 우대)

- 채용예정자(양성)훈련: 19개 직종(미개설 직종 13개)

연번	한국고용직업분류(KECO 중분류)	연번	한국고용직업분류(KECO 중분류)
1	028 무역·운송·생산·품질 사무원	11	811 기계장비 설치·정비원 (운송장비 제외)
2	131 컴퓨터하드웨어·통신공학 기술자	12	812 운송장비 정비원
3	133 소프트웨어 개발자	13	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용원
4	134 데이터·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	14	816 기계 조립원 (운송장비 제외)
5	140 건축·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	15	821 금속관련 기계·설비 조작용원
6	151 기계·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	16	824 용접원
7	153 전기·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	17	825 도장원 및 도금원
8	158 소방·방재·산업안전·비파괴 기술자	18	834 전기·전자 설비 조작용원
9	415 디자이너	19	836 전기·전자 부품·제품 조립원
10	621 항공기·선박·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	19개 직종	

* (음영셀) 2024년도 부산지역 우선훈련직종 중 미개설 훈련직종

- 재직자(향상)훈련: 26개 직종(미개설 직종 10개)

연번	한국고용직업분류(KECO 중분류)	연번	한국고용직업분류(KECO 중분류)
1	028 무역·운송·생산·품질 사무원	14	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직원
2	131 컴퓨터하드웨어·통신공학 기술자	15	815 자동조립라인·산업용로봇 조직원
3	133 소프트웨어 개발자	16	816 기계 조립원(운송장비 제외)
4	134 데이터·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	17	817 운송장비 조립원
5	140 건축·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	18	821 금속관련 기계·설비 조직원
6	151 기계·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	19	822 판금원 및 제관원
7	153 전기·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	20	823 단조원 및 주조원
8	155 에너지·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	21	824 용접원
9	158 소방·방재·산업안전·비파괴 기술자	22	825 도장원 및 도금원
10	415 디자이너	23	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직원
11	621 항공기·선박·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	24	835 전기·전자 부품·제품 생산기계 조직원
12	811 기계장비 설치·정비원(운송장비 제외)	25	836 전기·전자 부품·제품 조립원
13	812 운송장비 정비원	26	852 고무·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 기계 조직원 및 조립원

* (음영셀) 2024년도 부산지역 우선훈련직종 중 미개설 훈련직종

- 기존 지산맞 훈련과 중복되지 않는 지역특화산업 및 신기술·신산업 분야,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과정
 - 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훈련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반과정은 지양하고, 지역수요와 지역특화산업을 연계한 지역특화 훈련과정 우대
- 훈련시간
 - 적기에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720시간 초과 불가
 - 채용예정자훈련의 경우, 훈련기간 1개월 이상 및 월평균 훈련시간 120시간 이상 필수
- 개설 불가 훈련과정
 - NCS 경영·회계·사무(대분류 02) 분야의 중분류 01~03 등 기존 훈련기관 또는 타 훈련사업에서 훈련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어 공급 과잉 우려가 있는 과정은 제외
 - 타 훈련사업에서 운영되는 훈련과정 및 2024년도 지산맞 정기심사 승인 과정
- 훈련정원(총 인원 포함), 훈련시간, 교·강사, 시설·장비 등 기본적인 훈련과정 인정요건은 「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」 및 관련 매뉴얼 준수

○ 훈련과정명 작성(신청) 시 유의사항

※ 수시 훈련과정명 입력(신청)시, 반드시 아래 형식(예시)에 의거하여 입력(신청) 요망			
연번	구분	훈련과정명 (양식)	비고
1	일반	(수시) 000 향상과정_일반	※ 훈련유형이 중복되는 경우, 훈련과정명에 해당 키워드를 모두 기재하여야 함 - 훈련과정명 형식 미준수 시 유형별 훈련실적에서 누락될 수 있으므로 주의 <ex> (수시) 000향상과정_고용위기_유급
2	중장년ICT	(수시) 000 향상과정_중장년ICT	
3	고용위기	(수시) 000 향상과정_고용위기	
4	비대면	(수시) 000 향상과정_비대면	
5	유급	(수시) 000 향상과정_유급	

□ 채용예정자 훈련과정 심사 및 운영

○ 2024년도 지산맞 수시 채용예정자 훈련과정 판단 기준

-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은 기준 취업률 및 훈련생 지원 계획(채용약정서 등) 등이 담보되어야만 승인 및 운영 가능
- 채용예정자 훈련의 훈련-취업 연계 강화 지원을 위해 훈련개시 전일까지 '채용예정자 훈련 운영 안내 확인서' 제출 필수

※ 훈련과정 승인·인정 후 HRD-Net 실시신고 시 '확인서' 증빙 첨부 필수(서식2 참조)

- 채용예정자 훈련과정 판단 기준

구분	내용
취업률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규 과정 및 지역특화, 신기술 기반 훈련과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채용예정자 과정 훈련실적이 있는 경우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지산맞 훈련실적이 있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산맞 채용예정자 전체 과정의 평균 취업률이 60% 이상인 경우 개설 가능 ② 지산맞 훈련실적이 없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내일배움카드제 등 기관의 채용예정자 과정의 평균 취업률이 60% 이상인 경우 개설 가능 - 채용예정자 훈련실적이 없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관별 1개 과정(1회차, 600시간 이내)에 한하여 해당 분야 수요 및 향상훈련 실적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승인
훈련생 지원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훈련과정별 계획인원의 80%(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) 이상에 대해 채용약정서 제출 필수

* (동일·유사 과정) NCS 소분류(대표)가 일치하고, 교과목 내용 및 시간 모두 80% 이상 일치하는 경우

** (최근 2년 실적) 훈련종료일 기준 최근 2년(2022. 1. 1.~2023. 12. 31.)

*** (취업률) 훈련종료일 경과 후 3개월 이내 취업실적의 산술평균

□ 훈련비용

○ 훈련비의 훈련단가는 NCS 기준단가의 300% 이내에서 지원

- 2024년도 지산맞 수시 훈련과정 훈련단가 지원 기준

구 분	훈련단가 지원요율
일반과정	NCS 기준단가 100~150% 이내
지역특화 과정* + NCS 4수준 이상	NCS 기준단가 100~200% 이내
고속련·신기술 과정** + NCS 5수준 이상	NCS 기준단가 100~300% 이내

- * (부산지역특화산업) 초정밀소재부품산업, 저온고압에너지저장공급시스템산업, 실버케어테크산업
 ** (신기술 분야) AI, 클라우드, IoT, 메타버스, 5G·6G, 일반SW, 블록체인, 빅데이터, 사이버보안, 이차전지, 지능형로봇, 항공드론, 3D프린팅, 첨단소재, 차세대 반도체, 차세대 디스플레이, 바이오헬스, 에코업, 신재생에너지, 수소, 양자, 우주, 나노, 기타 신기술

○ 훈련비 지급 기준(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칙 제31조)

- 훈련비는 정산하지 않으며, 동일한 내용으로 「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 불가
- 훈련비를 제외한 훈련비용의 지원기준은 「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」 제17조를 따르며, 3개월 이상의 채용예정자훈련은 단위기간별로 중도 지급 가능

○ 훈련비용 지원요건 및 기준

항목	지원대상(요건)	지원기준
훈련비	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 대상 훈련일 것(파트너기관에 지불하는 훈련비 포함)	○ 실비심사를 통해 확정된 금액
훈련수당	① 협약기업에 채용이 예정된 훈련생에게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1개월 이상 실시할 것 ② 해당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일 것 ※ 다만, 해당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직접 훈련수당을 지급하기가 어렵거나 원활한 훈련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동훈련센터에서 훈련수당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	○ 사업주(또는 훈련기관)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월 20만 원까지 지원 ※ 단위기간 1개월 이상 및 월 평균 120시간 미충족 시에는 훈련수당 지급 불가

항목	지원대상(요건)	지원기준
임금	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 중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대상 훈련일 것 ② 해당 재직근로자의 사업주가 훈련기간 중 임금을 지급할 것 ①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(협약기업에만 해당한다)에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훈련을 실시할 것 ② 해당 재직근로자의 사업주가 훈련기간 중 임금을 지급할 것	○ 사업주 지원규정 제17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준으로 지원
식비 또는 숙식비	①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훈련을 협약기업 재직자 또는 채용예정자에게 실시하고 훈련기관이 숙식을 제공하거나 해당 재직근로자의 사업주(협약기업에만 해당한다)가 숙식비를 지급한 경우 ② 훈련시간이 1일 평균 5시간 이상일 것	○ 식비는 1일 5천 원까지, 숙식비는 1일 14천 원(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휴일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월 330천 원)까지 지원

※ 임금(유급휴가훈련의 임금 및 대체근로자에 대한 임금)은 훈련참여기업에게 직접 환급

○ 세부항목별 지원기준

구분	지원대상(요건)	지원기준
보조인력 활용비	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훈련과정을 운영하는 보조인력 인건비	○ 시간당 단가는 최저임금액의 130% 한도 - 다만,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·야간 및 휴일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저임금액의 150%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○ 훈련회차 당 1명, 사전준비 및 사후정리에 소요되는 각 8시간(총16시간) 인건비 지원 가능
훈련시설 및 장비 임차비	① 훈련과정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훈련장비의 감가상각비, 자산취득이 불가한 렌탈 비용 ② 훈련과정 운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훈련시설의 대관료	○ 실비로 인정하되, 인프라 지원금의 시설·장비비 지원 항목을 제외한 비용 ※ 파트너훈련기관은 임차비 지원 불가
강사료	① 공동훈련센터(파트너훈련기관)에서 운영하는 지산맞 인정과정에 한함 ② 훈련과정별 강사인정 기준에 적합한 자	○ 시간당 20만원 한도로 지원하되 전담자는 내부강사로 지급 불가 ○ 해당사업 전담자 이외의 인력은 내부강사로 활용 가능 - 다만, 강사료는 외부강사료의 1/2 초과 불가 ※ 훈련기관이 신기술(4차 산업 중심)분야의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강사료 지급기준 등급별 지원한도 이상의 강사료가 필요함을 입증하는 경우, 심사위원회 결정으로 강사료 등급별 지원한도의 200% 이내에서 지원 가능

구분	지원대상(요건)	지원기준
여비	① 강사로 지급기준 ①, ②에 해당되는 자 중 훈련실시지역 외에서 출강한 강사에게 지급되는 여비 ② 훈련과정 운영을 위하여 전담인력 및 훈련과정 보조인력의 출장비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동훈련센터 내부 규정 준용
다과비	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훈련과정에 소요되는 다과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인당 1일 3천 원 한도
실습재료비	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훈련과정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실습재료 비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비 지원
교재구입비	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훈련과정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교재 인쇄 및 구매 비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비 지원
기타훈련비용	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훈련과정을 운영하며 소요되는 피복비, 문구비 등 ② 지산맞 사업 훈련과정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·장비에 대한 관리·유지비 - 단 인프라 지원금(시설·장비비) 항목에서 지원받는 유지보수비 관련 금액 제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문구비는 1인 1차수당 3,000원 한도 - 단, 120 시간 이상의 채용예정자훈련은 1인 1월당 3,000원 한도) ○ 피복비, 관리·유지비 등은 실비지원
훈련과정일반운영비	① 지산맞 사업 운영 및 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제반비용 ②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훈련과정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전기, 상하수도료 등 제세공과금 ③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훈련과정을 운영하며 소요되는 재해보험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훈련과정일반운영비를 제외한 훈련비의 7% 범위 이내(파트너훈련기관 지원비용 포함)

○ 등급별 강사료 지급 기준

등급 구분	A등급	B등급	C등급	D등급
강사료	20만 원(시간당) 한도	15만 원(시간당) 한도	7만 원(시간당) 한도	5만 원(시간당) 한도
기타 사항	내부강사는 등급별 강사료의 1/2 이내로 지급, 지산맞 사업 전담자에게 내부강사료 지급 불가			
신기술 분야 외	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 경력 10년 이상	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 경력 5년 이상	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 경력 1년 이상	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
	관련분야 석사 학위 취득 후 관련 경력 15년 이상	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경력 7년 이상	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경력 3년 이상	
	관련분야 학사(전문학사) 취득 후 동일분야 경력 20년(22년) 이상	관련분야 학사(전문학사) 취득 후 동일분야 경력 10년(12년) 이상	관련분야 학사(전문학사) 취득 후 동일분야 경력 5년(7년) 이상	
	관련분야 경력 30년 이상	관련분야 경력 20년 이상 기술사, 기능장 또는 변호사, 변리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 등 관련분야 전문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	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	
신기술 분야	관련분야 학사 취득 후 동일분야 경력 5년 이상	관련분야 학사 취득 후 동일분야 경력 3년 이상	관련분야 학사 취득 후 동일분야 경력 1년 이상	
	관련분야 경력 7년이상	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	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	

* 신기술 분야는 훈련과정이 [별첨 1]의 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며, 시간당 20만 원 한도에 불구하고 공동훈련센터가 20만원 이상의 강사료가 필요함을 입증하는 경우 20만 원 이상 지원 가능

※ 위 강사료 지급 기준안에도 불구하고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상 공직자 등은 동법 시행령 [별표2]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됨을 유의

3 훈련과정 운영 유의사항

- 운영절차는 「사업주훈련 지원규정」, 「지산맞 운영규칙」 등을 준용
- 훈련과정은 '24. 12. 31.까지 종료되어야 하며, 공동훈련센터 등 훈련기관에서는 실적 관련 데이터 제공 등에 적극적 협조
-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은 HRD-Net 훈련실시 신고시 '채용예정자훈련 운영안내 확인서' 제출 필수
- 승인받은 회차별 정원의 120%까지 실시신고 가능
 - ※ 단, 훈련시설·장비가 실시인원에 부합해야 함
- 대면 집체훈련을 원칙으로 하되, 쌍방향 훈련에 한해 집체훈련 대체 허용
- 지역 고용현안에 즉시 대응을 위해 최종확정일로부터 2주 이내 훈련실시 권장
- 회차 추가는 승인 이후 연간 3회까지 가능

< 수시 훈련과정 회차 추가 기준 >

- ▶ '24년 승인된 수시 훈련과정은 별도 심사 없이 회차 추가(최대 3회)하여 실시 가능
- 3회를 초과하여 회차 추가 시 부산인자위의 사전 승인 필수
- ▶ 단, 채용예정자 훈련과정 회차추가 시
 - ① 기 실시과정의 평균 취업률이 60% 이상이면서
 - ② 과정별 계획인원의 80% 이상에 대한 채용약정서 및
 - ③ 채용예정자 훈련 운영안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실시 가능

- '24년도 수시 과정 운영실적 등에 대해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지표에 반영 예정
(목표대비 실시인원, 취업률, 수료율 등)
- '25년도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심사 시, 기관별 '수시 목표 달성률' 및 '훈련비 집행률' 반영 예정
 - 지역 훈련비 예산 배정 시, '수시 훈련과정 실적' 및 지역 내 '훈련비 집행률' 반영 예정

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□ 신청·접수기간: 사업기한(~12. 31.) 제출 월 5일 17:00까지 제출(총 4회)

- 제출 월: 2024년 4월, 6월, 7월, 9월
-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, 주말 및 공휴일은 접수받지 않음
- 신청을 희망하는 훈련과정에 대해 훈련과정일람표 사전 제출 필수
 - 제출기한: 전월 25일 12:00(정오)까지
 - ※ 제출기한 마지막 날이 휴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, 전일까지 제출
 - 제출방법: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이메일 제출
(busanhrd@korcham.net, kaiser@korcham.net)
 - 제출내용: 2024년 0차 수시 훈련과정일람표_공동훈련센터명

□ 제출서류

- 2024년 부산지역 수시 훈련과정 신청서 및 훈련계획서
 - 2024년 0차 지산맞 수시 훈련과정 훈련계획서(원본) 및 제출 공문 각 1부
 - 훈련계획서 제본 6부(공단 부산지역본부 1부, 부산인자위 5부)
 - 훈련계획서 전자파일(USB) 1개 제출
 - 전자파일(USB)에 신청 공문, 훈련계획서, (최종)훈련과정일람표, 훈련과정운영비 내역, 강사비용 산출내역을 각 1부씩 수록하여 제출(※ e-mail 제출 불가)
- 기타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및 심사위원의 요청 서류 등

□ 접수방법: 방문 또는 우편 접수

※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□ 접수처: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및 공단 부산지역본부

5 추진계획(안)

□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선정

심사	훈련계획서 접수	훈련계획 사전 검토	훈련계획 심사 및 승인	공단 부산지부 과정 인정	훈련 실시
	훈련기관 → 부산인자위, 공단 부산지부	공단 부산지부, 부산인자위	부산인자위	부산인자위 → 공단 부산지부	훈련기관
1차	4. 5.(금)	4. 10.(수)	4. 16.(화)~24.(수)	4. 26.(금)	4. 29.(월)~
2차	6. 5.(수)	6. 10.(월)	6. 13.(목)~20.(목)	6. 21.(금)	6. 24.(월)~
3차	7. 5.(금)	7. 10.(수)	7. 16.(화)~22.(월)	7. 23.(화)	7. 24.(수)~
4차	9. 5.(목)	9. 10.(화)	9. 20.(금)~26.(목)	9. 27.(금)	9. 30.(월)~

※ 훈련과정 일람표는 제출 전월 25일까지 사전 제출 필수

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별첨 1

24개 신기술 분야 정의

연번	기술명	정의
1	AI	○ 인간의 학습능력, 추론능력, 지각능력,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이며 하나의 기반 기술이자 범용 기술
2	클라우드	○ 언제 어디서나 필요에 따라 ICT 자원, 서비스 개발환경, 응용SW 등의 서비스를 유연하게 활용 할 수 있는 컴퓨팅 방식
3	IoT	○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과 사물, 사물과 사물 간 지능통신을 할 수 있는 M2M 개념을 인터넷으로 확장하여 현실과 가상세계의 모든 정보와 상호작용하는 개념
4	메타버스	○ ‘초월’을 뜻하는 메타(Meta)와 ‘세상’을 뜻하는 유니버스(Universe)의 합성어로,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면서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
5	5G·6G	○ (5G) 기존의 4세대 이동통신인 LTE에 비해 방대한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(초고속) 전송하고 실시간으로(초저지연) 모든 것을 연결(초연결) ○ (6G) 초성능/초대역/초정밀/초지능을 바탕으로 XR콘텐츠, 완벽한 시기술적용, 등 구현 가능
6	일반SW	○ 컴퓨터, 통신,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·제어·입력·처리·저장·출력·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·명령의 집합 등을 의미
7	블록체인	○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가 모든 거래 내역 등의 데이터를 분산, 저장하는 데이터 분산 처리 기술
8	빅데이터	○ 데이터의 저장/추출/정제/분석에 기존의 도구를 활용할 수 없을 정도의 양과 처리 속도를 갖는 상태를 의미
9	사이버보안	○ 사이버 보안이란 사이버환경에서 다양한 보안 위협으로부터 개인·기업·국가의 안전과 신뢰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
10	이차전지	○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켜 외부의 회로에 전원을 공급하고, 방전되었을 때 외부의 전원을 공급받아 전기적 에너지를 화학적 에너지로 바꾸어 전기를 저장하는 전지
11	지능형로봇	○ 외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지능 시스템 및 관련 기반기술을 개발 또는 생산
12	항공드론	○ 지능적 기능을 통해 자율 비행능력을 갖춘 항공기를 포함하는 무인 항공기 제조, 무인항공기와 연결하는 전자 장치 및 운용 시스템을 개발 또는 생산, 활용하는 산업
13	3D프린팅	○ 디지털 설계/디자인 데이터를 이용, 소재를 적층하여 3차원 물체를 제조하는 산업으로 정의
14	첨단소재	○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간 연관효과가 큰 기초 물질, 또는 이를 활용하여 미래 소재의 수요 바탕으로 소재별 융·복합을 통해 성능과 기능을 향상하는 기술
15	차세대 반도체	○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능을 포함하거나 성능과 소모 전력을 개선하여 고도화 분야(차세대 이동통신, 자율주행차 등) 및 미래 신시장 분야(지능형로봇, 실감형콘텐츠 등) 등의 주요 기기의 부품이 되는 반도체
16	차세대 디스플레이	○ 주요 응용기기들의 정보를 제약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크기, 해상도, 화질, 소비전력, 시인성 등의 성능이 개선되거나 새로운 형태의 디스플레이
17	바이오헬스	○ 생명공학 및 의·약학 지식에 기초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(의약품, 의료기기, 화장품)하거나 서비스를 제공(의료서비스)하는 산업
18	에코업	○ 기후대응, 물관리, 자원순환관리, 환경지식정보감사 서비스, 환경안전보건, 대기관리, 환경복원 및 복구, 지속가능환경자원
19	신재생에너지	○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·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, 또는 햇빛·물·지열·강수·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
20	수소	○ 수소를 생산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기술
21	양자	○ 양자 고유의 특성(얽힘, 중첩 등)을 활용하여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 넘는 초고속연산(양자컴퓨팅), 초신뢰 보안(양자통신), 초정밀계측(양자센서)을 가능케 하는 기술
22	우주	○ 인공우주물체의 설계·제작·발사·운용 등에 관한 연구활동 및 기술개발활동 또는 우주공간의 이용·탐사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
23	나노	○ 물질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(100nm이하)에서 조작·분석하고 제어하여 새롭거나 개선된 물리적·화학적·생물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소재·소자 등을 만들어 내는 과학기술
24	기타 신기술	○ 위 23개 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신기술